

금융산업공익재단 주관사업 홍보협력 가이드라인

(2022.4.4. 금융산업공익재단)

1] 홍보협력의 기준

- 금융산업공익재단(이하 '재단')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협력기관은 협약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의 협력과 사업의 내용 및 실적을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함
 - * **사업의 결과물**(각종 보고서, 결과물, 홍보물, 기념품, 홈페이지/앱 등 ICT 매체물, 언론 노출 등)에서 협력기관의 단독사업인 양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방식을 절대적으로 지양하여야 하며, 표지 및 후미 등에 협력기관의 로고·명칭만을 단독 표시하거나 협력기관의 로고·명칭을 재단의 로고·명칭에 우선하여 표시하거나 재단의 로고·명칭을 협력기관의 로고·명칭에 종속하여 표시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
 - * 협력기관은 사업의 결과물에 재단이 주관·기획·진행하는 사업임을 명시한 문구를 표지 상단, 하단 및 최후단 등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크기, 방식으로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
- 재단과 협력기관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·종교적 또는 영리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제하여야 함
-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는 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, 협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의 소유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 - * 협력기관은 재단의 승인 없이 사업의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
 - * 협력기관이 재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론,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에 발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력기관은 재단에게 발표의 목적,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함
 - * 협력기관은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한 간행물 등을 발표할 경우 재단이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명시한 문구를 표지 및 최후단 등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크기, 방식으로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

② 홍보협력 세부 표시 지침

○ 책자, 보고서, 안내문 등 자료 제작 시

1. 표지 상단에 재단 로고 및 문구 표시

(예) “이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주관(·기획)하고 □□□□(협력기관)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.”

(예) 사업의 결과물 등에 대한 중앙정부, 관련단체 등의 시상 내역이 있을 경우 시상 내역 표시 (협력기관의 자체 시상 등은 제외)

2. 표지 하단에 재단 및 협력기관 로고 표시

(예) 재단 및 협력기관 로고를 모두 표시하되, 재단 로고를 우선하여 표시

3. 내지 1쪽 하단 박스 안 등 적절한 위치에 문구 표시

(예) : “본 책자(·보고서)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주관(·기획)하는 □□□□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△△△△에서 작성하였습니다.”

○ 교육동영상, 교구재, 기념품, 카드뉴스, 레터, 홈페이지/앱, 보도자료 등 제작 시

1. 영상 도입부(첫화면), 표지, 포장 등에 재단 로고 및 문구 표시

(예) “이 교육은 △△△△(사업취지)를 위하여 금융산업공익재단과 □□□□(협력기관)이 협력하여 제작한 영상(·진행하는 사업)입니다.”

* 협력기관 로고만을 표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, 재단이 동의하지 않은 기관의 로고를 표시하지 않아야 함

(예) “이 ▽▽▽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□□□□(협력기관)이 협력하여 제작하였습니다.”

2. 표지 하단 및 제작물 최후단에 재단 및 협력기관 로고 표시

(예) 재단 및 협력기관 로고를 모두 표시하되, 재단 로고를 우선하여 표시

③ 사업평가 시 홍보협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반영 및 환류

○ 재단 이사들이 주축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연간 1~2회 사업의 결과물, 협력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 검색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

○ 홍보협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사업의 종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(끝)